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6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정부조직법 및 지방재정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5조제3항, 제28조제1항 및 제2항

-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'안전행정부'를 '행정자치부'로 수정

○ 조례안 제6조제4항제2호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은 위원의 자격을 민간위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

○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일치하도록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이”를 “행정자치부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2호 중 “: 지방의회의원,”를 “: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
제11조 중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·② (생 략)	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이 정한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	③ ----------행정자치부에서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③ (생략)	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위촉직 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	2.----------:----------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	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

가에 관한 사항	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1조(실비보상) ----------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----------.
제28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, 성과 평가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	제28조(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) ①----------행정자치부장관----------.
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.	② ----------행정자치부장관-----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기획감사실장 김 진 영
연 락 처	(033)330-2206

관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2 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
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
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
4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
5.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

④ ~ ⑥ 생략

제32조의3 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

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~ ⑥ 생략